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747호 2010. 3. 5.(금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: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 ----- 2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공고 ----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72호 신조 공인 공고 ----- 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7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80호 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----- 10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8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---- 1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2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0. 2. 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입안목적 :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
2. 위 치 : 서구 관리지역 일원(금곡동, 대곡동, 마전동, 불로동, 오류동 일원)
3. 면 적 : 149,913m²
4. 결정내용
 -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: 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149,913	-	149,913	100.0%	
관 리 지 역	관리지역(미세분)	149,913	감) 149,913	-	-
	보전관리지역	-	증) 107,457	90,783	71.7%
	생산관리지역	-	증) 6,258	4,270	4.3%
	계획관리지역	-	증) 35,928	54,860	24.0%

○ 결정도면 등 관계서류 : 별첨(생략 : 열람장소에 비치)

5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4호

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

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10년 3월 5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명칭 :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
2. 공고기간 : 2010.03.05~03.19(15일간)
3. 게시장소 :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, 검암신명2차, 검암신명4차, 검암풍림2차, 검암풍림3차, 경서가이아, 경서태평, 당하금강, 당하대우, 당하풍림1차, 당하풍림2차, 당하풍림3차, 마전대원1차, 마전대원2차, 마전대주, 마전풍림3차, 불로대림, 왕길검단풍림, 왕길신명, 원당금호, 원당대림, 원당동문, 원당신안, 원당엘지,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
4. 공고대상 : 2009.10.01~11.30.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(매도자)단독신청 “붙임참조”(13명)
5. 공고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(이의)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(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·통장·도장,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)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, (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(최초분양자 등)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6. 기타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(032-560-4757,47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
1.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.
 2.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. 끝.

10월, 11월 월 매도자

연번	건물명칭	동	호	납부자	비고
1	당하대우	103	603	오성찬	
2	당하대우	103	1404	홍여찬	
3	원당엘지	110	303	김동현	
4	마전대원2차	203	1406	한상철	
5	마전대주	103	803	안은태	
6	불로대림	106	2002	고점순	
7	원당동문	105	1201	서향숙	
8	당하대우	107	1101	전기용	
9	당하대우	110	801	김정수	
10	원당금호	104	602	이해도	
11	당하풍림3차	307	802	송정순	
12	당하풍림3차	307	1202	이정행	
13	당하풍림1차	102	2001	최분이	

[별지 제8호 서식]

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

(NO.)

권리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전화번호	☎)	H.P)	
	과세물건			
조 정 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전화번호	☎)	H.P)	

조정신청
사 유

※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(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)

조정신청 대상자
및 증빙서류

-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
- ② **부담금 계약사실** 또는 **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(영수증 원본, 사본, 금융거래내역 등)**의 제출이 가능한 자

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

(NO.)

조 정 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전화번호	☎)	H.P)	
	과세물건			

※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(벌칙)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68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(도로명:소로1류7호선, 사업명:원창동 84-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)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0. 3. 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【도로명:소로1류7호선, 사업명:원창동 84-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】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84-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
- 명 칭 : 소로 1류 7호선

3. 사업시행 면적·규모

- 면 적 : 1,335㎡
- 규 모
- L=122.0m, B=10.0m

4. 사업시행자

-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
- 성 명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5. 사업기간 : 2009. 3. ~ 2010. 3. 31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72호

신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3. 3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인신조 사유
 - 경서 2, 3구역 도시개발사업(특별회계 운영)
2. 공인의 사용 예정일 : 2010년 3월 8일
3. 신조공인 인영

“별첨 참조”

신조공인 인영

연 번	신조공인명	규 격	인 영
1	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	2.1*2.1	
2	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인	2.1*2.1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77호

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

1.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.

상호	소재지	성명	구분	폐업일
원마트	인천 서구 가정동 504-7,11 지하5,6호	하정미	구내	2010.03.03
대성식당	인천 서구 가좌동 560-26	신영옥	일반	2010.03.03

2.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,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**아래 기간 내에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접수기간 : 2010.03. 03 - 2010. 03. 10

나. 접수 및 문의처 : 서구청 지역경제과 (☎560-4434)

다. 접수서류

1)소매인지정신청서

2)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3)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
4)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

5)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(장애인, 국가유공자 증명서류)1부.

-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
라. 참고사항 (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)

1)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2)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

3)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2010. 03.03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80호

개별주택가격(안)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

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(안)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etax.incheon.go.kr>)와 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「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」를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열 랐

- 기 간 : 2010년 3월 5일 ~ 3월 26일
- 장 소 :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etax.incheon.go.kr>)
※ 방문 열람은 서구청 세무과
- 내 용 :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(안)

□ 의견제출

- 기 간 : 2010년 3월 5일 ~ 3월 26일
- 제출사항 :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
- 제출자 :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
- 제출방법
 - 인터넷 :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etax.incheon.go.kr>)
 - 직접 제출 : 개별주택 소재 군·구(읍·면·동) 세무과(서구청 세무과)에 비치되어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

□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

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284호

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

1.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.

상호	소재지	성명	구분	폐업일
한식부페	인천 서구 가좌동 119-21	문순희	일반	2010.03.04
훼미리마트 원당중앙	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99블럭9롯데 103호	김혜선	일반	2010.03.04

2.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,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**아래 기간 내에 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접수기간 : 2010.03. 04 - 2010. 03. 11

나. 접수 및 문의처 : 서구청 지역경제과 (☎560-4434)

다. 접수서류

- 1)소매인지정신청서
- 2)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3)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- 4)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
- 5)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(장애인, 국가유공자 증명서류)1부.
-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
라. 참고사항 (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)

- 1)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- 2)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
- 3)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

2010. 03.04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